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38 발의연월일: 2020. 8. 21.

발 의 자: 강선우·김경만·황운하

이해식 · 서영석 · 오영환

강병원 • 맹성규 • 권칠승

이상직 · 김승남 · 김정호

이수진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로 의료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이 경우에는 의료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을 것이나, 성범죄를 이유로 의료인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극히 드물어 성범죄를 범하더라도 제한 없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임.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범하였음에도 제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로부터 진료를 받는 일반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의료인일반에 대한 신뢰도 손상될 것임. 일반 국민이 의료인을 신뢰하며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범한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임.

주요내용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5호 신설).
- 나. 의료인이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3년 이내 재교부를 금지함(안 제65조제2항 단서).
- 다.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면허 재교부를 금지함(안 제65조제3항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5조제2항 단서 중 "제8조제4호"를 "제8조제4호·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조제5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제2항에 따라 면 허를 재교부받은 후 다시 제8조제5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호 및 제65조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 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제8조(결격사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	
료인이 될 수 없다.	<u>.</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②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	
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	
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	
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
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 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 설>

<u>제8조제4호·제5호</u>
③ 제8조제5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제2항에
따라 며치르 게고보바흐 ㅎ 다

③ 제8조제5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후 다 시 제8조제5호에 따른 죄를 범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재 교부하지 못한다.